

흰 고무신과 검은 두루마기의 유언

수년전 필자는 교회자정(教會自淨)에 일말의 도움을 보태고자 소위 '기독교 중재위원회'(基督仲裁委員會)를 발족하고자 의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뜻있는 법률가, 학자,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갈수록 세상법[교회법(教會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에 의존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자성(自省)과 자정(自淨)을 촉구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의기투합되었지만 끝내 막다른 길에서 무산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 위원회의 지위(地位)와 권능(權能)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갈수록 강박(剛愎)해지고 흉포화(凶暴化)되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다독이고 감싸고 보듬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여 그것도 세상의 법 앞에 호소하며, 저마다의 이해와 안위를 구하는 일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크리스천 또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정법(實定法)의 보호아래 생활하고 있는 까닭에, 때로는 법의 보호에 호소할 수 있음은 마땅한

권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내부의 문제는 개입을 최대한 배척하고 자제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땅한 도리라고 볼 것입니다. 국가의 실정법 또한 이러한 도리를 존중하고, 가급적 종교적 사안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회사건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회 또한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교회의 법률행위나 재산관계 등을 다룸에 있어서 나름의 법률적인 기본상식들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한 특수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세상법을 적용하려들었다가 뜻밖의 낭패에 직면한다거나, 달리 세상법의 적용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내부의 문제를 일일이 세상법에 호소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일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말씀의 법을 도외시하고 이를 오로지 세상법의 판단에 맡겨둔다면, 세상법의 지위가 말씀의 법 위에 서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그렇다면 교회의 감찰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입니다.

애초 기독교중재위원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곧 가뜩이나 세상이 교회와 크리스천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고 있는 모습을 이에 더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나아가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개별 교단에도 이 같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예를 들면 '재판국')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기능과 권능은 이미 형해화(形骸化)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빈번한 세상법에의 호소는 없거나, 때로 있더라도 가뭄에 콩 나듯 띄엄띄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회의 치리도 문제입니다. 일단 교회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문제가 촉발된 교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쳐 버린 셈이나 다름이 없고, 설령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정법상 교회는 이해집단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인 총유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 위원회가 제대로 본연의 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교회문제는 다만 교회내부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시각에서 시끌벅적하지 않게 조용하고도 침잠한 가운데 그 행사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회 예하의 재판국은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 목회자만의 이익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 교회내부의 장로(또는 당회)들 또한 치리의 주체가 아닌 분열 당사자 이쪽저쪽의 대변인에 불과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순수목적에서의 기능을 올곧게 감당하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갈수록 급증하는 교회내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상법에의 호소는 어느 정도 잠재워 둘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 모두는 한 마디로 방관자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주동자라는 입장에서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은 기독교중재위원회 발기 당시 필자가 모아 두었던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증거를 엿보일 수 있습니다. 이하 찬찬히 살펴보면서 작금의 위기상황에 뿌려진 유황덩어리의 실재(實在)를 살펴보고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근 불행히도 교회내분이 발생하여 집사 수십 명이 교회를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들 집사들이 몰려와 애초 교회개척 때부터 출석하면서 그간에 많은 헌금을 바쳤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있게 한 교회의 기여를 참작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재산의 일정지분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개척 당시부터 상당한 기여를 한 장본인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들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면 좋을까요?”

이 경우 교회는 둘로 분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교인 일부가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면 그들은 교회탈퇴와 동시에 교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어떠한 교회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권도 없습니다.

“교인 일부가 교단의 신앙노선에 불만을 품고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자신들만의 의사에 기하여 우리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을 탈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교인들과 불화를 겪게 되고 급기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자기들끼리만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당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탈퇴한 그들에게 예배당 사용을

금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교인이 만약 교회를 탈퇴하면 교회재산이나 그 밖의 사용권은 상실하게 되나, 이 경우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것은 교회탈퇴가 아니므로 교회재산 및 사용권에 관한 권리주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교회 예배당 사용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와의 분쟁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노회를 탈퇴기로 하였습다. 당초 우리 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의거 교회의 부동산은 모두 노회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등기를 노회 명의로 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득불 노회에 교회등기를 이전하여 달라고 청원하였습다. 그런데 노회는 교단 헌법의 규정을 들어 교회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헌법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노회를 상대로 교회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면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약 400여명에 이릅니다. 노회에서 우리교회에 파송한 목사의 품행이 문제되어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300여명은 그대로 남고 100여명은 노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회를 변경한 100여명은 또 다시 새로운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인들은 우리가 소수(100여명)

라는 이유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가 분열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인들은 종전의 교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목회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당회를 통해 예배인도 금지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목사는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담임목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약 300여명이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장로들이 난입하여 설교 중에 있었던 목사의 마이크를 뺐고 교회 밖으로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이후로의 예배는 둘째 치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장로들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설교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 같은 딱한 사정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상법에 호소하여 낱낱이 치부를 들어내면서까지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잠한 중에 화해를 도모하고 침잠한 중에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위 사례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당사자가 목사, 장로, 노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이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 않음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기독교중재위원회’에서 꿈꾸던 목적이었고 자원했던바 취지였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간 필자가 목도한 교회내부 문제를 대충 그룹별로 묶어보면, 교회재산의 처분 및 그 방법, 표시방법, 권리취득 및 상실, 교단의 변경 및 탈퇴, 교단 헌법의 효력,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및 예배당 사용권, 교회와 교단과의 법률문제, 교회의 사무처리, 신앙생활 및 교회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교회재판의 효력 및 세상법의 수용문제, 형사처벌에 관한 교회문제, 교회재산의 부당처분, 교회건축에 따른 법률문제, 교회와 조세와의 문제, 교회 헌법의 유효성 등등 가지 수도 천차만별 다종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시 들먹이기에 이 같은 딱한 사정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상법에 호소하여 감추어야 할 치부를 들어내면서까지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잠한 중에 화해를 도모하고 침잠한 중에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교단이나 노회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가장 먼저 앞세워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슴을 찢는 회개와 폐부를 도려내는 참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교회의 권위를 지켜가자면 그도 누군가에게는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단이 되어야 하며 노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사례들을 통하여 보았기로 그 당사자가 다름 아닌 그 누군가(교회, 교단, 노회)이기 때문입니다.

화제를 잠시 바꾸어, 목회자나 교회지도자들은 그들 나름의 헌법이나, 권징조례나, 교회의 처리규례 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는 우리가 그 대상일 뿐 그들은 여기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고작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단을 추종하는 것’ 한 가지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군가로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러기에 때마다 세상법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교단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노회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총회의 회장 더 나아가 대표총회장이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어디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인가요? 집구석은 썩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려고 이처럼 안달이 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자에게 여기 떠올리기 끔찍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중재위원회를 주도했을 때, 한 교단의 중재국을 총괄하고 있었던 소위 한 교회지도자는 이러한 행사[기독교중재위원회의 발기(發起)]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폐악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교단의 재판국을 우습게 보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논외의 사안으로 당시 필자의 신문사설을 문제시 삼아 우회적으로 겁박(劫迫)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친절하게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충고까지 잊지 않고 덧붙여 두었습니다. 참고로 문제시된 신문사설의 내용은 ‘... 적박한 골고다의 구름을 지쳐 가신 한 청년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여 ...’라는 문구에서 ‘청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청년이라는 표현은 오만불손하다는 것이 그의 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나의 친구’(90장), ‘저 아기 잠이 들었네’(113장)에서와

같이 ‘친구’ 또는 ‘아기’로 표현했다면, 아마도 필자는 그에 의해 출교처분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도 ‘성부의 어린 양’(83장)에 비추어 ‘양’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필자는 이단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요행이 그것도 이 같은 겁박에 그친 것이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처분이었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목사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도 뒷짐 지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피켓을 들고 세상만방에 소리소리 외쳐서 세상의 지탄을 힘입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바에야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까요? 개신교의 교단 수가 2011년 현재 230여개라고 합니다. 예하에 노회가 몇 개나 될 것인지는 어렵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노회장이나 총회장에 오를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기존의 것을 다시 둘로 쪼개고 그도 또 넷으로 쪼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저마다단위 폭대기에 좌절하여 이 세상을 내려다보았더니 그도 어디에 비할 바 없이 흐뭇하셨습니까?

교회도 아닌 호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그도 비서실장이라고 그것도 교회 부목사님을 운전기사로 둔 그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추억의 판공비를 물 쓰듯 써 재껴가면서 구두밀창이 닳도록 뛰어 다니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다가 끝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필자에게 ‘대한민국’과 ‘무궁화’를 답으로 구하셨던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설교 시에 검은 두루마리를 정갈하게 입고 단위에 오르셨습니다. 심방 중에는 헤어진 ‘성경던서’를 가슴에 품으시고 흰 고무신을 신으시고 가가호호 방문하셨던 그때 그 모습을 필자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유년주일학교서부터 지켜보아왔던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네 옛날 선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엄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눈깔사탕도 곧잘 주셨지만 항상 회초리를 한 켠에 품고 다니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혹독하게 나무라셨던 때는 교회 수돗물을 틀어놓고 마셨을 때였습니다. 바가지에 받아 마시라는 엄명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회초리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 바닥이나 강단 등에 돌왁스를 칼로 갈아 수건에 문질러 청소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한결같이 주머니에는 눈깔사탕이 있었습니다. 땀땀 풀어지는 지도 모르시고 우리와 함께 번쩍번쩍 광나는 예배당 바닥에서 함께 땀굴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장성한 우리에게 목사님은 그때서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당 바닥은 눈물바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정갈하게 닦아 두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곧 그 바닥을 제단으로 보시고 계셨던 때문이었습니다.

후임목사님의 모습 또한 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그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젠 두 분 다 고인(故人)이 되셨지만 두 분 모습은 필자 또한 고인이 될 때까지 이 땅위에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증이라고 해봐야 교회명의로 되어 있었던 포니 한 대가 고작이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환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릎을 꿇어 바닥에 피를 묻혀야 할 때입니다. 두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폐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통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패악무도하게도 되레 죽이고도 살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천인공노하게도 이 땅위에서의 복을 구하며 있습니까?

모쪼록 필자 또한 우리 모두는 물론이려거니와 교회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중에 우리 또한 자랑스러운 혈전(血戰)의 선대(先代)로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앞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의 때라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01:20-21)